



사회보험료 지원까지 꼭 챙기세요!

사회보험료 지원방안

- ❖ 두루누리 **사회보험료** 지원대상 확대
 - ▶ 지원대상 기준보수 (기존) 월 보수 190만원 미만 → (개선) **210만원 미만**
 - ▶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**5인 미만 보험료의 90%**(5~10인 미만 80%)
 - 기존 가입자는 40% 지원
- ❖ **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% 경감**(5~30인 미만 50%)
 - ▶ '19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
- ❖ 4대 보험 신규가입시 **세액공제**
 - ▶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사용자 실부담금의 50%

4대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- ❖ **고용보험**
 - ▶ 사업주: 고용창출 · 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
 - ▶ 노동자: 실업급여 · 훈련 등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
- ❖ **산재보험**
 - ▶ 산재발생에 따른 사업주의 재정적 · 형사적 부담 해소
 - ▶ 산재요양부터 완치까지 의료비, 휴업급여 등 지원
- ❖ **건강보험**
 - ▶ 직장가입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실시
 - ▶ 퇴직 시 임의계속 가입 적용 가능
- ❖ **국민연금**
 - ▶ 평생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
 - ▶ 매년 물가상승만큼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 보장

❖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변경사항

구분	2018년	2019년																	
신청절차	고용보험 신고 + 안정자금 신청	<'18년 지원사업장>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계속 지원 ※ 단, 최저임금준수확인서 제출 <최초 신청> 좌동 <근로자 추가 신청> 별도 안정자금 신청 없이 고용보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단, 공동주택 및 고용보험적용 제외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신청																	
지원대상 월평균 보수	<상용, 주40시간 미만>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<일용> 1일 87,000원 미만	<상용, 주40시간 미만>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<일용> 1일 97,000원 이하																	
지원금액	<상용> 1인당 월 13만원 ※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	<상용> (5인 미만) 1인당 월 15만원 (5인 이상) 1인당 월 13만원 ※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																	
일용노동자	1개월 동안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	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월 근로일수</th> <th>월 지급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2일 이상</td> <td>13만원</td> </tr> <tr> <td>19일 이상~21일 이하</td> <td>12만원</td> </tr> <tr> <td>15일 이상~18일 이하</td> <td>1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월 근로일수	월 지급액	22일 이상	13만원	19일 이상~21일 이하	12만원	15일 이상~18일 이하	10만원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월 근로일수</th> <th>월 지급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2일 이상</td> <td>13만원</td> </tr> <tr> <td>19일 이상~21일 이하</td> <td>12만원</td> </tr> <tr> <td>15일 이상~18일 이하</td> <td>10만원</td> </tr> <tr> <td>10일 이상~14일 이하</td> <td>8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월 근로일수	월 지급액	22일 이상	13만원	19일 이상~21일 이하	12만원	15일 이상~18일 이하	10만원	10일 이상~14일 이하
월 근로일수	월 지급액																		
22일 이상	13만원																		
19일 이상~21일 이하	12만원																		
15일 이상~18일 이하	10만원																		
월 근로일수	월 지급액																		
22일 이상	13만원																		
19일 이상~21일 이하	12만원																		
15일 이상~18일 이하	10만원																		
10일 이상~14일 이하	8만원																		
정기지급일	매월 10, 20일	매월 15일																	



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

<http://jobfunds.or.kr>

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





업종에 관계없이 사장님이라면 신청하세요!

일자리 안정자금이란?

▶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

지원대상

❖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

※이런 경우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

-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, 고용위기지역·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
- 공동주택(아파트) 경비·청소원, 사회적기업, 장애인직업 재활시설, 자활기업 등은 규모 무관

❖ 최저임금 준수

▶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,350원

❖ 월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

▶ 재직 중 신청하지 못한 퇴사자도 지원

❖ 고용보험 가입,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

▶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(합법취업 외국인, 초단시간 노동자 등)

- 고소득 사업주(개인-사업소득·법인-당기순이익 기준 5억원 초과),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,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
- 특수관계인(대표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), 휴·폐업 사업주도 지원 제외



1회 신청으로 1년 내내 알아서 드립니다!

지원금액

❖ 노동자 1인당 월 최대13만원 (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까지)

- ▶ 월중 입·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
- ▶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

지원방식

- ❖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
- ❖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
- ❖ 18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
 - ▶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 제출



집, 일터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접수하세요!

신청서 접수

❖ 온라인

명칭 (운영기관)	사이트 주소
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 (근로복지공단)	total.kcomwel.or.kr
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국민연금공단)	www.4insure.or.kr
건강보험 EDI(국민건강보험공단)	edi.nhis.or.kr
국민연금 EDI(국민연금공단)	edi.nps.or.kr
고용보험(한국고용정보원)	www.ei.go.kr
KT EDI	bips.bizmeka.com

❖ 방문·우편·팩스

- ▶ 근로복지공단,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

문의·상담

- ❖ ☎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- ❖ ☎ 고용노동부 1350

